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관운영 감사결과

2018. 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고, 기관의 역할·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여 하고자 실시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감사기간 : 2017. 09. 18. ~ 2017. 09. 26. (7일간)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2013. 1. 1.부터 처리한 업무

3. 감사중점

-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
- 예산·회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각종 규정 관리 적정 여부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 적정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19	0	0	0 (0)	0 (0)	1	0	0	1 (0)	6 (0)	0	0	12	0 (0)

※ 총 건수 중 "기관경고" 2건은 미포함

Ⅱ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관련기관)	처분 종류	처분요구, 조치결과	비고
1	직원 호봉획정 업무처리 부적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사회적경제담당관)	통보	(처분요구) ○ 센터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7조에 경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 개정 (조치결과) ○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개정 완료	완료
		통보	(처분요구) ○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7조 별표2의 경력 환산율표에 일반직 연구 경력내용 삭제하고,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과 무관하게 상근으로 근무한 업무경력 환산율을 50%로 변경 (조치결과) ○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개정 완료	"
		통보	(처분요구) ○ 직원 3명 호봉 재 획정 필요 (조치결과) ○ 호봉 재획정 완료	"
		통보	(처분요구) ○ 지도점검 결과 이행사항 미이행시 위·수탁 기간 연장 또는 수탁 기관 공모 선정시 평가에 반영 하는 방안 강구 (조치결과) ○ 점검결과 평가반영 공문 시행(통보 완료)	"
2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미흡 및 운영 부적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통보	(처분요구) ○ 인사위원회 상설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사위원들의 임명절차 (승낙서 징구, 위촉장 수여)를 진행하고, 외부인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간사 선정, 위원회 소집요건과 방법, 위원의 제척·회피· 기피 등의 내용을 규정에 포함하는 방안 마련 (조치결과) ○ 인사위원회를 '비상설', 인력후보군(20명 임명)으로 운영 ○ 인사위원 임명절차 등 규정 개정 완료	"
		통보	(처분요구)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의 채용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명문화 하는 방안 마련 (조치결과) ○ 규정 및 매뉴얼 개정 완료	"

		주의 요구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지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모법인 위촉 등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관련 사항 직원 교육 실시('18.1.15.) 	"
3	사회적경제교육 운영지원 공모사업(2013년) 추진 부적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주의 요구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추진 시 심사위원단 구성을 공정하게 하고, 심사 과정에서 선정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서울시 계약관련 규칙 및 지침 교육 실시('18.1.15.) 	"
4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대외활동 관련 지침 수립 및 운영 등 부적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직담당관)	통보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고유 업무 수행과 관련한 선정심사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와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외부전문가로 참석한 경우 등을 구분하여 사례금(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심사 및 자문 회의가 운영될 수 있는 방침을 수립하여 운영 할 것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종사자 회의 참석 등 수당 지급 시행 계획 수립·시행('18.2.9.) 	"
		통보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활동 지침 제2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규정상 미흡할 수 있는 복무관리를 보완하고, 외부강의 등의 대가총액 상한을 정하는 등 대외활동 지침 개정 할 것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활동 지침 개정 완료 	"
		통보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수탁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소속 임직원이 수탁사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울시 관리·감독부서의 심의위원회, 자문회의 등에 참여할 경우 참석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거나 지급총액에 있어서 年 상한을 두는 등 서울시 민간위탁관리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 강구할 것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운영 매뉴얼(사업부서용) 개정 완료 	"
5	용역 계약 과업 내용 변경 및 검수 부적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주의 요구 통보	<p>(처분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역 변경 승인 및 검수조서 작성, 물품관리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약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

			(조치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서울시 계약관련 규칙 및 지침 교육 실시('18.1.15.)	
6	'13년 사회적경제 온라인 포털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주의 요구 통보	(처분요구)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서울시 계약관련 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 등의 업무를 처리할 것 ○ 업무를 부 적정하게 처리한 관계 직원들에 대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직무교육 실시할 것 (조치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서울시 계약관련 규칙 및 지침 교육 실시('18.1.15.)	"
7	계약 입찰 공고 업무 처리 부적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주의 요구	(처분요구) ○ 계약 입찰 공고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 (조치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서울시 계약관련 규칙 및 지침 교육 실시('18.1.15.)	"
8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분리발주 부적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주의 요구	(처분요구)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단일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서울시 계약관련 규칙 및 지침 교육 실시('18.1.15.)	"
9	물품관리 부적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시정 요구 통보	(처분요구) ○ 비품관리 대장에 누락된 145건 78,220천원에 대해 즉시 등재할 것. ○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조치결과) ○ 비품관리대장에 누락된 145건 등재 완료 ○ 재물조사 관련 전 직원 교육 실시('18.1.15.)	"

※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익명 처리된 용어(갑,을.... 가기업, 나기업...등)는 각 처분요구서별로 적용되었습니다.(NO 1. 처분요구서 가기업 ≠ NO 2. 처분요구서 가기업)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 담당관	2017 (2017.12.)	통보, 통보, 통보, 통보	-	-	-	-

제 목 직원 호봉획정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함)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민간 네트워크 허브로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11조에 의해 A법인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센터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7조(임용기준)에 의하면 직원의 경력연수 환산은 별표2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환산하고자 하는 경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직제규정’ 제6조(직렬 및 직급)에 의하면 직원의 직렬은 일반직, 연구직으로 구분되고, 일반직은 1급~6급, 연구직은 3급~5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 또한, 센터의 급여체계는 직급별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센터 1급은 공무원 4급, 6급은 공무원 9급에 해당) 성과상여금도 지급하고 있다.
- 따라서 동일 직군, 동일 직급, 동일 노동이라 하더라도 입사 당시 확정된 호봉에 따라 실질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호봉획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호봉획정 방법에 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가.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전력조회(前 경력조회) 미실시 및 호봉획정 부적정

- 호봉제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17.2.1.)에 의하면 호봉획정권자는 신규 채용자의 초임호봉 획정 전에 ‘호봉

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9 page)

- 전력조회 대상 기관은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이고 전력조회 시 확인 사항은 정규 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관, 직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있다.(10 page)

○ 아울러, 호봉에 포함되어야 할 경력은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고,(65 page) 상근이나 정기적인 보수에 대한 증명과 관련하여 인우증명은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0 page)

○ 따라서 객관적인 호봉확정을 위해서 센터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상의 호봉확정 등 종래의 검증된 방법 등을 참고하여, 신규 채용자의 경우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를 배부하고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유사경력은 전력조회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 그러나 센터는 신규 채용자들이 제출한 경력증명서만을 확인하는데 그쳤으며, 상근이나 정기적인 보수에 대한 증명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봉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은 경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 신규 채용자들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정규 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관, 직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므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

1) '17.4.10. 입사한 갑의 경우

- '17.4.4. B단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는 '01.11.28.~ '08.10.30.(83개월) 동안 B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 '17.9.22. 감사당시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01.11.28.~ '02.5.5.31. 기간 동안 C단체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등 [표 1] 과 같이 19개월은 객관적으로 경력을 증빙할 수 없다.

[표 1] 건강보험을 통한 객관적인 경력증빙 관련 사항('01.11.28.~ '08.10.30.)

연번	가입자 구분	사업장 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비 고
1	직장피부양자	C	1997.02.19.	2002.06.01.	'01.11.28.~ '02.05.31 경력증빙 안됨.(6개월)
2	직장가입자	D	2002.06.01.	2002.12.01.	6개월 경력 인정
3	직장피부양자	C	2002.12.01.	2003.07.25.	- B단체에서 작성한 '03년 결산 보고서에 1년분 급여 지급내역 포함 (갑)
					- '02.12월 기간 경력증빙 안 됨 (1개월)
4	직장가입자	B	2003.07.25.	2007.10.31.	51개월 경력인정
5	직장피부양자	C	2007.10.31.	2009.03.31.	- '07.10.31.~ '09.03.31. 경력증빙 안 됨.(17개월) ※ 센터에서 '08.11월~'09.3.31 기간은 경력에 산정하지 않아 실제 12개월 경력 증빙이 안 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자료 재구성

- 결과적으로 전(前) 경력 19개월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에도 경력에 포함됨으로써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13.1.23. 입사한 을의 경우

- '12.2.5. E단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는 '08.3.2.~'10. 8.31. (30개월) 동안 E단체에서 준비위원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 '15.2.12. 제출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에 의하면 '08.3.2.~'10.9.1. 기간 동안 지역세대주로 되어 있어 '08.3.2.~'10.8.31. 기간 동안 E단체에서 준비위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또한, '13.1.18. F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12.5.2.~ '13.1.15. (8개월) 기간

동안 F단체 정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 '15.2.12.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12.5.30.~'13.1.23. 기간 동안 지역세대주로 되어 있어 '12.5.2.~'13.1.15.(8개월)동안 D단체 정책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결과적으로 전(前) 경력 38개월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에도 경력에 포함됨으로써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13.1.23. 입사한 병의 경우

○ '96.10.15. G단체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는 '90.5.21.~ '91.7.15. (13개월) 동안 정책소위원장이었다고 되어 있으나,

- '17.9.25. 감사당시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86.5.6.~ '94.3.29. 기간에 H단체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 '90.5.21.~ '91.7.15.(13개월)기간 동안 G단체 정책소위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결과적으로 전(前) 경력 13개월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에도 경력에 포함됨으로써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이에 대하여 센터는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이 폐업 또는 2000년대 중반 이전의 중소기업 및 비영리 시민사회조직의 경우 대다수가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고, 금융기관을 통한 보수지급을 시행하기 이전 시기여서, 이 경우 인우증명, 공공연구소 및 출판물 등에 의한 자료를 참고하여 예외적으로 호봉확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호봉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호봉에 포함되어야 할 경력은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근이나 정기적인 보수에 대한 증명과 관련하여 인우증명은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센터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 직원의 학위취득, 연구경력 호봉산정 부적정

○ 호봉제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 '15.1.29.)에 의하면 유사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대학원에서 동일분야(100% 인정) 및 유사한 분야(50% 인정) 학위(석사 또는 박사) 취득에 따른 법정연수(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 연한을 말함)를 호봉에 산정하는 경우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78 페이지)

-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100% 인정)의 호봉산정은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중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68 페이지)

○ 따라서 센터는 호봉산정에 있어서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박사학위 취득 및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에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직으로 채용한 직원에 한정하여야 했다.

○ 그러나 센터는 '15.10.26. 센터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7조(임용기준)의 별표2를 개정하면서 일반직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유관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 기관이 정한 최저 연수(최대 4년 이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립한 연구기관, 학교 등 국내외 등록된 연구기관 등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며 연구를 수행한 경력의 80%를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여 유사경력 인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센터는 일반직 직원 중 신규 전략사업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 업무 직원들은 박사학위 취득과 연구경력에서 취득한 조사분석 능력이 요구되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소요한 전 과정이 아니라 최저연한(최대4년 정도)조차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학력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나,

센터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7조(임용기준)의 직원의 직급별 임용기준인 별표1에 의하면, 일반직의 채용자격기준에 1급에서 4급까지 경우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자격기준의 하나에 해당하고,

센터 '직제규정' 제6조(직렬 및 직급)에 직원의 직렬을 일반직, 연구직으로 구분하고 있어 센터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 사회적경제과(現 사회적경제담당관)의 지도점검 결과 이행 부적정

○ 서울시 사회적경제과(現 사회적경제담당관)의 ‘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사회적경제과-1010, '16.1.23.)에 의하면, 사회적경제 유관 조직과 사회적경제 무관 조직의 상근 근무 경력을 동일한 환산율 80%를 적용하는 것은, 별첨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민간경력 호봉인정 업무 매뉴얼 또는 타기관 등의 지침에 비교하여 보면 유사업무 경력자와 무관경력자가 동일하게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경력자의 경력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연구직과 비교해 보아도 무관경력 연구직의 경우 50%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과(現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 유관 조직과 사회적경제 무관 조직의 상근 근무 경력을 동일한 환산율로 적용하는 것은, 유사경력 인정제도 취지에 합당하지 않음으로, 사회적경제 무관 조직의 상근 근무 경력의 경우에는 인정범위를 채용 예정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한정하도록, 운영규정의 개정 및 시행을 권고(개선권고)하였다.

○ 따라서 센터는 사회적경제 무관 조직의 상근 근무경력 호봉산정의 경우 채용예정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한정하여 호봉에 산정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호봉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연구직과 같이 사회적경제 무관조직의 상근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50%만 적용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여야 했다.

○ 그러나 센터는 '16.3.31. [표 2]와 같이 센터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7조의 별표2를 개정하면서 채용예정 분야와 동일 분야 경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직접 담당할 경력도 경력 인정에 포괄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지도 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이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 경력 80% 반영)

[표 2] 경력 환산율표 변경 내역

직종	구 분	환산율	개정일자
일 반 직	1. 아래 대상기관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과 무관하게 상근으로 근무한 업무 경력	50%	'15.03.20.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및 국공립학교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p>1. 아래 대상기관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과 무관하게 상근으로 근무한 업무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및 국공립학교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80%	'15.10.26
일 반 직	<p>1. 아래 대상기관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과 무관하게 상근으로 근무한 업무 경력 중</p> <p>(1) 채용 예정 분야와 동일 분야 경력</p> <p>(2) 사업기획, 전략기획, 영업 및 유통, 자원개발, 네트워킹 등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및 국공립학교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80%	'16.03.31
연 구 직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립한 연구기관, 국내외 등록된 연구기관 등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며 연구직을 수행한 경력 (연구직과 무관한 경력 제외)</p> <p>2. 사회적경제 유관 조직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 개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력</p> <p>3.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등에서 상근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 개발과 관련한 연구 수행 경력</p> <p>4.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기관이 정한 최저연수 (단,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음)</p>	80%	변동사항 없음.
	1. 상기한 기관 및 업무범위 외의 경력	50%	

○ 한편, 사회적경제과(現 사회적경제담당관)는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적정하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순환근무 등 센터 내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센터 핵심 업무를 고루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력은 당해 채용분야와 직접 관계되지 않더라도 인정하는 범위를 한정 명시하였다는 결과 보고를 받고, 당초의 지적사항이 개선되었다고 처리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 결과 '17.4.4. 입사한 정의 경우 채용분야가 '기술혁신랩 공간운영'이나, 채용분야와 무관한 I업체를 운영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였는데, 이는 경력증명을 할 수 있는 모든 경력이 채용분야와 무관하게 호봉에 반영(경력80%)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설령 I업체 운영이 상기의 규정상 '영업 및 유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력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합리적 사고를 지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비취볼 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호봉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 경력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유사 경력 인정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 또한, I업체 운영에 대한 경력인정도 아래 [표3] 과 같이 개정된 센터의 인사 관리 및 보수규정 제7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80%가 아닌 50%만을 임의적으로 반영하였는데, 이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아닌, 센터 스스로도 규정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사회적경제 조직과 무관한 경력 호봉산정 사항

연번	직급	성명	채용분야	전경력	근무기간	개월 수	반영율	반영 경력
1	계약직 나급	정	기술혁신랩 공간운영 ('17.4.4.입사)	J업체 (사원)	1996.8.5~ 2000.8.30.	49	80%	39.2
2				I업체 (대표자)	2001.11.20.~ 2014.03.15.	148	50%	74

【 조치할 사항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 센터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7조에 경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또한, 유사경력 인정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7조 (임용기준) 별표 2의 일반직 직종의 '1.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경력' 내용을 삭제하며,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과 무관하게 상근으로 근무한 업무경력 환산율

80%를 연구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아울러, 갑, 을, 병에 대해 유사경력 전력조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 증명(상근 및 정기적인 급여 지급)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호봉을 재확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서울시사회적경제담당관은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내용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행 결과는 위·수탁기간 연장 또는 수탁기관 공모 선정 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2017 (2017.12.)	통보, 통보, 주의요구	-	-	-	-

제 목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미흡 및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칭함)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민간 네트워크 허브로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A법인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미흡

○ 센터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4조(인사위원회)에 의하면 센터장은 채용 등 직원의 인사에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게 되어있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 사무국장 및 팀장 외에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인사 1/3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 아울러 같은 조에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의 정족수, 비공개 회의 원칙 및 회의내용 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서면심의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은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둔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상설 또는 비상설(인력 후보군)로 운영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센터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본 규정에는 외부 인사위원의 자격기준, 인사위원의 위·해촉 및 그 절차,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의 선정과 위원회 소집 요건 및 방법, 제적·회피·기피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다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이와 관련하여 '13년~'17.9월 현재까지 센터는 20여명의 인사위원 후보군(엑셀 서식)을 만들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위원들을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했다는 근거서류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상기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외부 인사위원의 자격기준, 인사위원들의 위·해촉, 이해관계 있는 안건으로부터의 제척·회피·기피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므로, 직원 채용기준 등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 직원의 승진, 포상, 징계 등이 임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필요

- 센터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8조(임용기준)에는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절차 및 방법은 센터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센터는 채용절차 및 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간의 추진내용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류전형의 경우 심사위원으로 선발분야 팀장과 사무국장 또는 센터장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인사 및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 부적격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회의를 통해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선정한다.
 - 면접전형은 정규직의 경우 5~7인 규모로 운영위원회 지정 인사위원 후보군을 기본으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시 운영위원장 등과 협의를 통해 채용분야 관련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사를 섭외하여 구성하며, 계약직의 경우 선발분야 해당팀장을 포함하여 인사위원 3인 이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이고 해당분야 최고득점자인 경우 채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종합격 여부는 심사위원 토론 및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결과적으로 센터 인사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지정하지 아니한 사람과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20여명의 인사위원 후보군(엑셀

서식)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아래 [표 1] 과 같이 '13년부터 '17년 5월까지 11명이 15차례의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인사위원이 아니면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현황 ('13~'17년)

연번	선발유형	면접일시	면접대상	위원수	인사위원이 아닌 심사위원	구분
1	경영지원팀장	2013.09.30.	3	4	갑, 을	-(60점) 등 3명 전원 불합격
2	글로벌사회적경제 협의체서울사무국	2014.02.21.	4	6	병	-(85점) 4급 합격, -(89점) 2급 합격
3	운영지원팀장	2014.07.30.	3	5	정	-(90점)3급 합격
4	사회적경제시장 조성지원	2014.08.26.	3	4	무	-(78점)6급 합격
5	사회적경제 홍보기획	2014.10.06.	3	5	무	-(86점)5급 합격
	경영지원사업	2014.10.06.	1	4	무	-(59점) 불합격
6	경영지원사업	2014.11.03.	4	5	무	-(79점) 등 4명 전원 불합격
	시장조성지원단	2014.11.03.	3	5	무	-(78점)등 3명 전원 불합격
	경영지원사업	2014.11.03.	1	5	무	-(80점)계약직 나급 합격
7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2014.11.28.	2	5	무	-(74점) 5급 합격
	경영지원 사업	2014.11.28.	2	5	무	-(62점)등 전원 불합격
8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업무	2015.05.11.	2	6	기	-(76점) 5급 합격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2015.05.11.	2	6	기	-(45점) 불합격
9	경영개선 프로젝트 매니저	2015.06.17.	1	5	기	-(71점)계약직 나급 합격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업무	2015.06.17.	2	5	기	-(82점)합격했으나 입사 포기
	경영지원 사업개발	2015.06.17.	2	5	기	-(70.6) 5급 합격 -(70.6) 불합격
10	입찰행정공모	2015.07.28.	2	5	기	-(70점)등 2명 불합격
11	마을기업지원 팀장	2015.08.04.	1	5	경	-(61점) 불합격
	마을기업지원 경영지원	2015.08.04.	1	5	경	-(82점)계약직 다급 합격
	마을기업지원 사업담당	2015.08.04.	1	5	경	-(82점)계약직 가급 합격

12	사회적경제 전략기획업무	2015.10.06.	4	5	신, 입	-(83.2점)5급 합격
	마을기업활성화 경영지원업무	2015.10.06.	1	5	신, 입	-(72.8점)불합격
13	마을기업 총괄업무	2015.10.29.	2	5	경	-(79점)계약직 나급 -(89점)계약직 나급 합격
	기반조성팀 업무총괄	2015.10.29.	1	5	경	-(56점)불합격
14	지역기반 사업개발	2016.06.08.	2	7	계	-(80점)계약직 가급 -(75점)계약직 나급 합격
	운영 및 행정사무	2016.06.08.	1	7	계	-(78점)계약직 다급 합격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업무	2016.06.08.	2	7	계	-(64점)등 2명 불합격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2016.06.08.	1	7	계	-(80점)계약직 가급 합격
15	현장지원 매니저	2017.05.24.	2	5	자	-(86점) 5급 합격
	경영지원1팀장	2017.05.24.	1	5	자	-(60점) 불합격
	기획실장	2017.05.24.	1	5	자	-(90점) 3급 합격

※ 구분에서 '이름'은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익명(-) 처리

- 이와 관련하여 센터가 '13.9.30. 실시한 경영지원팀장 채용 면접에서는 5명의 심사위원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하지 않았거나,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20여명의 인사위원 후보군(엑셀 서식)에 포함되지 아니한 2명(갑, 을)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였는데, 당시 면접을 치른 채용후보자 3명은 심사결과 모두 탈락하였다.
- 이에 따라 '13.10.2. 재공모를 하였는데, 앞선 심사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갑이 해당 공모에 지원하여, '13.10.18. 서류전형에 합격(총 5명 지원자 중 3명 통과)하였고, '13.10.15. 실시한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영지원팀장에 선발되었다.
- 결과적으로 '경영지원팀장'이라는 직위 공모과정에서 면접위원이었던 사람이 최종합격하는 셈이 되었는데, 이는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 이에 대하여 센터는 필요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지정 인사위원 외에 채용분야 관련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사를 섭외하여 구성하는데, 갑이 사회적기업 현장경영 및

지원조직의 경험을 두루 가지고 있어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당시 경영지원팀장을 채용하지 못해 다시 채용공고를 냈고 갑이 지원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지원팀장으로 채용 되었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별도의 의도가 없었던 채용결과라고 주장하나,

센터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에, 운영위원회 지정 인사위원 외에 채용분야 관련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사를 섭외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인사위원 후보군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 2명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한 자체가 문제이며, 당시 지원자가 모두 탈락하였고 다음번 동일한 채용시험에 前 면접위원이 지원하여 최종 합격된 사항은, 지원자가 모두 탈락한 첫 번째 면접과 그 다음 면접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으로 센터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직원 채용

- 센터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8조(채용의 원칙)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나,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공고를 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센터는 '15.4.30. 사무국장 체제를 상임본부장 체제로 변경하면서 상임본부장(2급)을 규정에 없는 모 법인(A법인)의 위촉으로 채용하였는데,
 - 직무수행능력 등의 검증 없이 위촉을 통해 임용된 상임본부장(촉)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자진 강등을 요청해 '16.4.20일 3급으로 강등하였고, 상임본부장은 다시 선발하게 되었다.
- 또한, '13.1.23. 입사한 인의 경우 '13.8.31. 퇴사하여 센터의 모 법인 에서 근무하였는데, 공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의 채용절차 없이 '14.8.1. 인사위원회 결정만으로 재입사하였다.
- 결과적으로 센터는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채용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 ☞ 이에 대하여 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특성상 제한된 인력풀(후보군)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법인의 직원 채용과 직원의 역량 내 순환근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센터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8조(채용의 원칙)에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나,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공고를 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센터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 인사위원회가 상설인지 비상설인지 명확히 규정하기 바라며, 인사위원들의 임명절차(승낙서 요청, 위촉장 수여 등)를 진행하고, 외부인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위원회 소집 요건과 방법,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의 내용이 규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또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의 채용절차 및 방법은 구체적인 규정으로 명문화 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아울러, 직원의 채용 등 인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인사 위원 지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모 법인 위촉이나 인사위원회 결정 등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센터의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8조에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절차 및 방법은 센터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 및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규정에 없는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채용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훼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 (기관경고)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2017 (2017.12.)	주의요구	-	-	-	
제 목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지원 공모사업(2013년) 추진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혁신에 대한 열정을 지닌 다양한 계층별 인재발굴·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력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지원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였다.

※ '13년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지원 사업 공모 개요

- 공모분야 : 사회적경제 전반
- 공모기간 : 2013.4.4.(목) ~ 4.15.(월)
- 운영기관 선정 기준 : 심사위원 평균점수 85점 이상
- 사업비 지급 : 필요예산의 최대 70% 사업비 지원, 최대 20백만원 미만
- ☞ 지원 및 선정 결과 : 지원단체 총25개 기관 중 9개 기관 선정

- 공모 사업 공고문(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3-007호)에 따르면
 -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기준은 심사위원 평균점수 85점 이상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2017.9.18. ~2017.9.26.) 공모사업 선정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 공모사업에는 총 25개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2017.4.18. 공모 심사를 통하여 9개 단체를 선정하였는데, 선정 단체 중 G, K, M 3개 단체는 공모 기준 점수에 미달되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¹⁾ 최종 선정되었다.

- ※ 한편, 또 다른 응모 단체인 H 등 4개 단체는 M(80점)과 심사 점수와 같거나 더 높았음에도 탈락하였음 (아래 [표 1] 참조)

[표 1] 지원 단체 심사점수 내역(평균 80점 이상)

연번	구 분	심사점수	선정기준	선정 여부
1	A	93.3	기준 충족	선정
2	B	92.3	기준 충족	선정
3	C	89.3	기준 충족	선정
4	D	88.7	기준 충족	선정
5	E	87.0	기준 충족	선정
6	F	85.7	기준 충족	선정
7	G	83.3	기준 미달	선정
8	H	82.7	기준 미달	탈락
9	I	81.5	기준 미달	탈락
10	J	80.7	기준 미달	탈락
11	K	80.3	기준 미달	선정
12	L	80.0	기준 미달	탈락
13	M	80.0	기준 미달	선정

- 공모사업 면접심사 심사위원으로는 내부위원 2명(갑, 을)과 외부위원 2명(병, 정) 총 4명이 위촉되었는데 아래 [표 2] 각 심사위원의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표 2]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비고
1	갑	서울시 사회적경제과(현 사회적경제담당관)	내부
2	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
3	병	가대 사회복지학부	외부
4	정	나대 재활학과	외부

- 심사위원 중 갑 위원은 총 25개 지원단체 중 13개 단체만 채점을 하고 나머지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점수 배점 없이 연필로 총점만 기재,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채점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갑 위원의 모든 채점표 원본에는 서명이 되어있지 않았다.
- 또 다른 심사위원인 을 위원은 모든 단체의 채점표 하단에 본인 서명만 하였을 뿐 평가 항목별 채점은 전혀 하지 않았다.

○ 한편 공모사업 선정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지원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배제(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런데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4명중

- 병 외부 위원의 경우 공모 지원 단체 중 하나인 “N”의 이사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 정 외부 위원의 경우 E가 있는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공모 지원 단체 중 하나인 “E”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음에도 심사위원단에 선정되어 심사를 진행하였다.

공모지원단체	심사위원	이해관계 등	최종선정여부
N	병	N의 이사회 이사	탈락
E	정	E가 있는 대학 재할학과 교수	선정

※ 다만, 심사과정에서 병 위원은 ‘N’, 정 위원의 경우 ‘E’ 심사 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음.2)

○ 또한 선정 심사 시 선정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상기 사업의 면접 심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사계획서에 심사 위원 명단, 면접 절차(1. 기관별 사업브리핑, 2.질의응답, 3.채점) 등은 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3)

- 공모사업 심사에 애초 심사위원단을 4명만으로 구성하여 전체 심사에 불참한 을 위원을 제외하면 총 3명의 위원만이 실제 심사에 참여하였고
- 심지어 그 3명의 심사위원 역시 일부 지원 단체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일부 지원 단체의 경우 아래 [표 3]과 같이 복수의 심사위원단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 못하고 1인 혹은 2인 심사위원의 점수만으로 선정·탈락이 결정되었다.

[표 3] 심사점수

심사위원	E	N	L	M	O	I
갑	-	-	-	-	-	-
병	87	-	80	72	74	80
정	-	79	-	88	79	83
합계	87	79	80	160	153	163
평균	87	79	80	80	76.5	81.5
선정여부	선정	탈락	탈락	선정	탈락	탈락

(평균 : 합계를 채점 위원 수로 산술평균)

- 이는 심사위원 다수에 의한 합의를 통해 공정한 심사 결과를 도출하고자 복수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한 애초의 심사계획과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동일한 공모 심사 절차에서 지원 단체 별로 다른 수의 심사위원 심사를 받음으로써 각 지원 단체가 받은 점수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우수 단체를 선정하는 자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참고] 일반적으로 심사위원단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최고점·최저점을 부여한 심사위원 점수를 제외한 합계 점수의 평균 점수로 산출

[참고]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조치할 사항】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 공모사업 추진 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준수로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2013년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 기준인 평균 점수 85점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3개 업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탈락 시키는 등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훼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하여 “기관경고”조치 (기관경고)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 담당관, 서울시조직담당관	2017 (`17.12.)	통보, 통보	-	-	-	-

제 목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외활동 관련 지침 수립 및 운영 등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16조 (겸임)에 따라 센터의 상근 임원과 직원은 센터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2016. 5. 1.부터는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 제16조에 따른 직원의 대외 활동 및 겸직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할 목적으로 「대외활동지침」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지침은 대외활동의 정의(유형), 신고 및 승인범위, 대가 기준, 근태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 「대외활동지침」 수립 절차 부적정 및 지침내용상 복무관리 규정 미흡

- 센터의 「운영규정 총칙」 제9조에 따르면 운영규정 이외의 센터 운영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에 따라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반기별로 법인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정한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보고해야 한다.
- 따라서 센터는 「인사관리 및 보수규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운영규칙 또는 지침의 수립은 센터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수립이 완료된 후에는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센터는 직원 복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대외활동과 관련한 신고 및 승인 범위, 대가기준, 근태처리 등을 포함하는 「대외활동지침」을 센터장의 공식적인 결재 없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법인 이사회에 보고 등의 절차도 없었다.
- 한편, 센터의 「대외활동지침」 제3조에서는 제2조 제2항의 제1호(출강 및 수강)⁴⁾, 제2호(참여연구)⁵⁾, 제3호(자문 및 심의)⁶⁾에 대해서는 대외활동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제2호(참여연구)와 제3호(자문 및 심의)의 기준 시간을 미달하는 대외활동이나 센터가 주관하는 회의 및 발표활동의 경우에는 외근 및 출장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대외활동을 행하는 경우에 받는 대가는 [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초과금액은 해당기관에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표1】 외부강의 대가기준(대외활동지침 별표1)⁷⁾

(단위:천원)

구 분	센터장	2급이하 직원	비고
1시간(상한액)	230	120	원고료 별도
초과1시간당	120	100	

- 그러나 본 지침에 따르면, 제2조 제2항 제4호(회의 및 발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정책발표, 토론, 세미나, 공청회, 심포지움, 교육 등에서 센터의 미션 및 업무와 관련한 의견개선 및 협의, 강의, 토론 등에 대한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제3조의 사전신고 및 제7조의 근태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그 결과 센터는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회의 및 발표 등에 대해서는 출장과 동일하게 처리는 하고 있으나, 요청자, 요청사유, 유형,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에 대한 상세 내역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제2조 제2항 제4호(회의 및 발표)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7조를 적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활동, 특수관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활동 또는 서울시 및 센터에 대해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 등이 사전에 승인여부를 통해 검증되고, 상세내역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표1]의 외부강의 대가기준[대외활동지침 별표1]에는 대가총액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료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 외부강의를 이유로 한 부당하고 편법적인 대가의 과다 수령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고료를 포함하여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총액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윤리행동강령에서는 임직원이 강의·강연·토론·기고 또는 세미나·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시 사회적경제 업무 관련 자문·심사 등 사례금(수당) 수령 적정성 검토 필요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2조(위·수탁사무)및 센터 「운영규정 총칙」 제5조에 따르면 센터는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및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를 하고 사회적경제 등의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등의 사무(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7년 9월까지의 A, B 등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B 등이 대외활동에 참석한 횟수는 총 352건으로 사례금으로 총 63,013,720원을 수령하였고, 이 중 A가 참석한 횟수는 전체 대비 83.2%인 293건이고, 사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53,698,000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의 경우 연도별로는 2014년 73건, 2015년 83건, 2016년 85건, 2017년 52건의 대외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사회적경제 업무관련 선정심사 110건, 자문회의 및 간담회 71건, 정책자문(토론)/발제가 53건, 강의/강연이 50건 등이었다.

○ 이 중 업무관리·감독부서인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요청하여 참석한 경우는 [표2]와 같이 총 87건이었으며, 사례금으로 A, B 등이 수령한 금액은 18,560천원이었다.(A가 참석한 경우는 76건으로 사례금으로 받은 수령액은 16,182천원)

【표2】 위탁기관(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요청한 외부강의등(심사, 자문회의) 현황(2013~2017년)

연도	유 형	참여횟수	실수령액(원)
2013년	심사	1	200,000
	소 계	1	200,000
2014년	강의/강연	1	250,000
	심사	11	2,359,000
	자문회의및간담회	3	150,000
	정책자문(토론)/발제	3	550,000
	소 계	18	3,309,000
2015년	심사	13	2,911,000
	자문회의및간담회	4	650,000
	정책자문(토론)/발제	1	150,000
	소 계	18	3,711,000
2016년	강의/강연	1	150,000
	심사	25	5,250,000
	자문회의및간담회	4	900,000
	정책자문(토론)/발제	1	100,000
	소 계	31	6,400,000
2017년	심사	18	4,690,000
	자문회의및간담회	1	250,000
	소 계	16	4,940,000
총합계		87	18,560,000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자료 재구성

○ 그러나 센터는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및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를 수행하고, 사회적경제 등의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 위탁기관이므로,

- 위탁기관인 서울시의 업무관리·감독부서인 사회적경제담당관과 수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가 협의 또는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 등의 업무와 관련한 선정심사, 자문 등)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사례금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특히, 2013년 ~ 2017년 9월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담당관 1과에서 A, 1인에게 심사 및 자문 등의 참석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16,182,000원에 이르다는 것은 사회적경제라는 분야가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선도적으로 노력하여 태동기를 거쳐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에 있고, 선정 및 자문 등에 참여할 전문가 직군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무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로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선출직인 의원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시사회적경제담당관은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이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체결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센터 고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선정심사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와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외부전문가로 참석한 경우 등을 구분하여 사례금(수당)이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심사 및 자문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방침(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 대외활동지침 제2조 제2항 제4호(회의 및 발표)와 관련하여 규정상 미흡할 수 있는 복무관리를 보완하고, 외부강의 등(명칭 통일 포함)의 대가총액 상한을 정하는 등 대외활동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외활동지침을 개정하고, 개정 시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서울시조직담당관은

- 민간위·수탁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소속 임직원이 수탁사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울시 관리·감독부서의 심의위원회, 자문회의 등에 참여할 경우 참석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거나 지급총액에 있어서 연(年) 상한을 두는 등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공모 기준 점수에 미달 되었지만 선정된 단체에 대한 선정 이유 및 선정 기준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 및 기준은 확인 되지 않음. 또한 사회적경제센터의 당해 건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2017.11.14. 제출)에서도 공모 사업 선정심사에서 조정회의를 통해 총9개 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준 점수 미달된 단체의 선정 원인과 기준은 확인 할 수 없었음
- 2) 비록 이해관계 있는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 건에 대해 심사 채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사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정한 심사 여부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됨
- 3) 심사과정에서 공모에 지원한 특정단체에 대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확인 되지 않는 한, 심사에 참여한 각 심사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 순으로 선정자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사 절차임.
- 4) 대학(원)에서 주당 1시간(학기당 15시간) 이상 강의를 하거나 수강하는 활동
- 5) 외부 연구기관이 주관하여 1개월 이상 수행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과제에 개인 자격의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센터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는 월 10시간 이상, 그리고 센터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월 5시간 이상을 참여하는 연구활동
- 6) 외부기관의 위촉을 받아 센터의 미션 및 업무와 관련하여 연속 3회이상 또는 5시간 이상을 참여하는 자문, 심의, 평가 등의 활동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추진되는 일시적인 자문 및 심의는 제외 가능)
- 7) 대외활동지침상에는 ‘대외활동을 행하는 경우에 받는 대가’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1상에는 ‘외부강의 대가기준’으로 되어 있어 ‘대외활동’과 ‘외부강의’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어를 ‘대외활동’ 또는 ‘외부강의등’으로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 있음.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8) 마을기업 선정심사(2014. 5. 26. ~ 5. 28., 621,000원),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선정 심사(2015. 3. 25., 205,000원), 혁신형사회적경제 선정심사(2015. 3. 30., 250,000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선정심사(2016. 3. 24. ~ 3. 25, 250,000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2차 5개년계획 자문회의(2017. 2. 13., 250,000원) 등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2017 (2017.12.)	주의요구, 통보	-	-	-	-
제 목	용역 계약 과업 내용 변경 및 검수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B법인과 「2014년도 서울시 통합기초컨설팅」 계약(계약금액 364,340천원, 계약기간 2014. 8. 1.~2015. 1. 31.)을 체결하였다.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A법인⁹⁾간에 체결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 A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과업 내역 변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르면,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제안을 할 수 있고,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14년 서울시 통합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용역” 계약¹⁰⁾을 B법인과 체결 후

- 계약상대방이 2015.2.10. 과업내역 변경(컨설팅 과업 감소 및 가이드북 제작 추가)을 요청하여 그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 계약상대방이 주장하는 변경요청 근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 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변경 승인 절차를 밟지 않지 않은 채 구두에 의한 합의로만 변경 승인하였으며,
- 그 후에도 승인 공문 발송 등 문서로써 보완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표] 과업 변경 요청 내역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단위:원)
사업비	컨설팅비	기초컨설팅 575회	기초컨설팅 509회	(25,542,000)
		일상멘토링 54회	일상멘토링 43회	(1,991,000)
	교육비	PT 및 워크숍	인원 감소	(2,726,500)
	운영비	사회보험료	인원 감소	(4,740,500)
	교육비	-	기초컨설팅 매뉴얼북(가이드북) 개발	15,000,000
		-	기초컨설팅 사례연구집 개발	15,000,000
-		자료 제작비	5,000,000	

나. 과업 검수 및 물품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및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 또한 계약이행 완료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센터에서는 앞서 과업내역이 변경된 계약 건에 대해 검사조서 작성을 비롯한 검수 행위를 하지 않아 용역 성과물(기초컨설팅 사례집 및 가이드북)이 실제로 목표 수량(각 500부, 100부)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 산출된 후에도 해당 물품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어떻게 활용·배포 되었는지¹¹⁾ 확인되지 않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 과업내역 변경 승인 및 검수조서 작성, 물품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계약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약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9)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임

10)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기간: 2014.8.1.~2015.1.31., 계약서 체결일: 2014.9.25., 계약금액: 364,340,000원

11) 최종 산출된 총 500부의 사례집 및 총 100부의 가이드북 중, 센터 보관용인 사례집 190부 및 가이드북 80부가 감사일 현재 (2017.9.20.) 망실된 상태임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2017 (`17.12.)	주의요구, 통보	-	-	-	-

제 목 2013년 사회적 경제 온라인 포털 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는 2013년 8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1차 입찰공고(2013.8.7.~8.26.) 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2013.8.29.~ 9.9. 기간 동안 재공고를 실시하여 2개 업체(단독1, 공동수급업체1)가 입찰에 참여, 공동수급업체인 “B-C”가 최종 낙찰되었다.

가. 공동수급업체 입찰참가자격 요건 관련 공고 부적정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에 따르면 “A법인”(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계약담당자는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온라인 포털 구축 및 운영’ 용역사업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으로 공동이행방식의 도급을 허용하면서 공동수급업체

참여자 가운데 주책임 기업에 대해서만 제안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부적합한 문구를 추가하였다.

-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공고하였다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013-9호, 2013.04.29.) 제29조 제7항에 의거 제안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이 등재된 업체만 입찰 참가할 수 있는데도 주책임 기업인 B업체만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가 있는 “B-C”로 구성된 공동수급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다.

※ 감사기간 동안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C업체의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한 바, 입찰제안 마감일 이후인 2013.10.1.~2015.9.30. 이었음.

나.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센터는 제안서 평가위원을 총 5인으로 구성하였다.
- 또한, 제안요청서상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서울시 사회적경제과(現 사회적경제담당관) 및 정보화 관련 부서, 센터 추천인사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구성한다고 명시하고도 센터는 제안서 평가위원을 센터에서 추천한 인사(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1명)만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다. 정량적 평가 관련 점수 산정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에 따르면 신인도 평가 시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고,
 - 「사회변화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서울시 재무과)12)에 따른 가산점 적용 시에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센터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B-C”에 대한 정량적 평가의 ‘신인도 및 가점 산정’ 시 아래와 같이 출자비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공동수급 업체의 출자비율을 바꿔서 잘못 적용하였다.
 - 신인도 평가항목(평점 1점) 중 “혁신형 사회적 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에 의해 혁신형(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 사업 모델을 가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는 공동수급업체 중 B업체(출자비율 51%)만 해당되므로, 신인도 점수를 0.51로 산정해야 함에도 출자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1점으로 산정하였으며,
 - 사회적 기업 및 우수기업 가산점 중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평가항목(평점 0.6점)도 B업체(출자비율 51%)만 해당되어 0.306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C업체(출자비율 49%)의 출자비율로 잘못 적용하여 0.294로 산정하였다.
- 그리고 제안요청서상의 가산점 중 ‘고용안정’ 가산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시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협약서 징구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근로계약서 제출 및 착공계 제출 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의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센터는 입찰참가자 2개 업체 모두가 제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입찰 공고 전에 이미 정규직화 한 것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가점을 부여하였다.
- 또한 가산점 중 ‘일자리 창출’ 가산점은 추가로 투입되는 신규채용 인원·등급·참여율(%)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신규직원 채용확약서를 근거로 입찰참가자(업체)별 산출점수를 계산하여 최고점수에 대한 비율로 산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B-C”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직원 채용확약서에는 신규직원에 대한 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센터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초급기술자로 인정하고 가점을 부여하였다.

○ 한편, 제안요청서에는 정량적 평가 중 ‘기술인력 보유상태’에 대한 평가는 보유한 기술인력의 등급을 점수화하고, 각 기술인력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입찰참가자(업체) 중 최고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기준으로 기타 입찰참가자(업체)는 점수를 비례율에 따라 환산하는 기준점수비례제 방식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기술인력 등급 : 기술사 5점, 특급 4점, 고급 3점, 중급 2점, 초급 1점

·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제안 요청서 첨부7)

· 평점 : 항목별 기준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그러나 센터는 평가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상기의 평점산식에서 분모에 들어갈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각 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자’, 분자에 들어갈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를 ‘각 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의 합산점수’로 잘못 적용하여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기술인력 등급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근거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등급으로 산정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기타 입찰참가자(업체)¹³⁾ 기준점수 비례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점수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업체가 획득한 점수가 평가배점 한도내에서 그대로 평가에 반영되었다.

○ 센터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량적 평가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수행경험’에 대한 평가는 상대평가제로 평가한다고 명시하였다. 제안요청서상의 적용규정인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2012년, “이하 세부기준”)’에 따르면 상대평가제 방식은 아래와 같이 등급별로 할당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는 [표 2]와 같다.

[표1] 상대적 등급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자료미체출시) 하
점수(%)	100	80	60	40	20	0
할당(%)	10	20	40	20	10	

[표2]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동일점수 발생 시 동점업체 모두를 해당 등급 중 상위등급으로 평가

○ 그러나 센터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수행경험에 대한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표1]에서의 등급 할당비율(%)과 [표2]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명시한 [표1]의 등급비율 점수도 [표3]과 같이 잘못 표기하였다.

- 또한, 상대평가도 세부기준에서 제시한 [표3]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에 따라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수', '우'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입찰참가자(업체) 중 최고 실적금액 및 실적건수 대비 기타 입찰참가자(업체)의 실적금액 및 실적건수의 비례율로 계산하였다.

[표3]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상대평가제 평가기준

등급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점수(%)	6점	5점	4점	3점	2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수행경험 평가비점은 각각 6점이므로 등급비율 환산 점수는 수(100%)이 6점이라면, 우(90%)는 5.4점, 미(80%) 4.8점, 양(70%) 4.2점, 가(60%) 1.2점으로 표기해야 함

- 아울러 제안요청서의 첨부2 「제안서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표(안)」에는 정량적 지표 중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한다고 명시하면서, 세부 평가방법에서는 자기자본비율로 명시하여 제안요청서상의 경영상태 평가 방법과 세부 평가방법이 일치하지 않았다.¹⁴⁾

라. 정성적 평가 관련 점수 산정 부적정

- 센터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기술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제안요청서상에 정성적 평가 점수(70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 “하”등급으로 처리한다. 라고 [표4]와 같이 명시하였다.

[표4] 정성적 평가점수 기준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 그러나 센터에서 제출한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위원들의 평가표를 보면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방법과 달리 등급별로 평가하지 않고,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성적 평가방법은 위원들이 등급별로 평가하면 담당자가 항목별 기준점수에 해당등급 점수 비율을 곱하여 환산점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 예를 들면 항목별 배점기준이 20점인 경우, ‘수’는 20점, ‘우’는 16점, ‘미’는 12점, ‘양’은 8점, ‘가’는 4점, 자료미제출시 0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는 항목별 배점이 20점인 경우, 20점, 18점, 15점, 14점이었다. 항목별 배점기준이 10점인 경우도 등급평가에 따라 환산 점수는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위원들이 실제 점수를 부여함에 따라 10점, 9점, 8점, 7점, 5점으로 제안요청서와 다르게 평가가 이루어졌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서울시 계약 관련 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2)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재무과-20551)은 공공분야에서 약자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신생기업의 진입장벽 제거, 사회적 약자의 고용안정 지원 및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하여 기존의 계약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행태 및 사회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과제는 약자기업 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가산점 제도 신설확대 등), 기업행태 등 사회변화 유도(진입장벽 완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진(대기업의 부당한 거래 관행 타파)이다.

13)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에 대한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는 단독업체로 기타입찰참가업체는 낙찰업체인 “B-C”에 해당됨

14) 실제 경영상태 평가는 자기자본비율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15) 계약체결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2017 (2017.12.)	주의요구	-	-	-	-

제 목 계약 입찰 공고 업무 처리 부적정

【 지적내용 】

- A법인은 '13.4.11.부터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칭함)를 수탁 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13년 이후 317건 (7,950백만원)¹⁵⁾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였다.
- 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¹⁶⁾(g2b)를 이용하여 공고(이하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라 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15.12.15.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이동형 홍보·판매부스 디자인 및 시공 용역’(계약상대방:B업체, 계약금: 99,000천원)을 발주 하면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를 하였어야 했음에도 센터 자체 홈페이지(sehub.net) 등에만 공고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등,
 - 센터에서 발주한 계약 중 [별첨]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 대상 40건에 대해 자체 홈페이지 공고만을 통해 계약 입찰 업무를 처리하였다.

※ 자체 홈페이지 등에만 입찰 공고한 40건의 계약 중 13건의 계약은 계약 발주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에 나라장터에 게재(공고)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만 게재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2017.9.18. ~2017.9.26.) 위 홈페이지 자체 공고 40건의 계약 건에 대해 응찰자 수를 확인하였는데,
 - [별첨]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공고 미실시 현황”과 같이 단독응찰 또는 미응찰에 따른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21건에 이르렀으며, 응찰자가 2인 경우는 15건, 3인인 경우가 3건, 5인인 경우가 1건으로 확인 되는 등 입찰 참여자의 수가 소수에 불과했다.
- 결국 센터가 계약 발주시 자체 홈페이지 공고 등 제한된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시 계약 절차에 참여 할 수 있었던 역량있는 단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상실케 되는 등 공정한 거래 및 계약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 계약 입찰 공고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구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17	7,950	29	314	86	2,126	120	2,593	51	1,879	31	1,038
공사	8	424	-	-	-	-	7	132	1	292	-	-
용역	304	7,397	29	314	84	2,073	112	2,442	49	1,542	30	1,026
물품	5	129	-	-	2	53	1	19	1	45	1	12

1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아래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함.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www.eat.co.kr),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붙임 :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공고 미실시 현황

연번	계약번호	계약상대자	계약명	계약금액(원)	응찰자수	비고(공고내용 등)
1	2013-136	-	서울시사회적경제온라인포털구축 및 운영 용역	101,100,000	2	센터 홈페이지공고
2	2014-186	-	서울혁신파크 사회적경제장터 위탁운영 용역	30,200,000	1	센터 홈페이지
3	2015-073	-	2015 서울 사회적경제 뉴스레터 제작	59,620,000	1	센터 홈페이지
4	2015-084	-	『15년 대학(원) 연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업 - 여성 특화형 사회적경제 MBA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86,900,000	1	센터 홈페이지
5	2015-085	-	15년 대학(원) 연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업 대학(원) 연계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115,900,000	1	센터 홈페이지
6	2015-087	-	15년 대학(원) 연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업 동북4구 산,관, 학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63,300,000	1	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유관 기관 홈페이지 등
7	2015-093	-	사회적경제 사상연구 및 실제적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	45,400,000	1	센터 홈페이지
8	2015-108	-	창신,승인 사회적경제 허브 운영	40,000,000	1	센터 홈페이지
9	2015-157	-	"2015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운영	46,000,000	2	센터 홈페이지
10	2015-165	-	서울사회적경제 패션봉제 DB구축 및 생태계 조성사업	39,415,350	1	센터 홈페이지
11	2015-203	-	사회적경제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플랫폼 모델개발용역	50,956,000	1	센터 홈페이지
12	2015-241	-	마을기업지원 프로세스 평가 및 발전방안,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기업 규모화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52,560,000	2	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유관 기관 홈페이지 등
13	2016-008	-	창신승인 지역재생리빙랩 운영용역	60,000,000	2	센터 홈페이지

연번	계약번호	계약상대자	계약명	계약금액(원)	응찰자수	비고(공고내용 등)
14	2016-030	-	2016년 뉴스레터제작용역	59,650,000	2	센터 홈페이지
15	2016-031	-	일상회계지원사업 수행기관 계약	66,660,000	2	센터 홈페이지
16	2016-032	-	일상법률지원사업 수행기관 계약	37,400,000	1	센터 홈페이지
17	2016-047	-	2016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수행용역	56,330,000	1	센터 홈페이지
18	2016-061	-	2016년 서울사회적경제아카데미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	40,000,000	2	센터 홈페이지
19	2016-079	-	찾아가는 공공구매박람회 기획 및 운영	69,850,000	2	센터 홈페이지
20	2016-082	-	해외모델 비교를 통한 서울의 사회적 경제 모델연구용역	30,000,000	1	센터 홈페이지
21	2017-010	-	창신승인 사회적경제 허브 운영 사업	77,700,000	1	센터 홈페이지
22	2017-014	-	2017년 일상경영 사회적경제 조직 회계 서비스 지원 사업 용역	119,887,000	2	센터 홈페이지(2016년 계속 사업)
23	2017-042	-	2017년 일상경영 성장기 사회적경제 조직 전문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	30,000,000	1	센터 홈페이지(2016년 계속 사업)
24	2017-049	-	2017 뉴스레터 제작용역	55,350,000	2	센터 홈페이지
25	2017-089	-	2017년 사회적경제 통합컨설팅 진단·평가 사업	45,996,000	3	센터 홈페이지
26	2017-097	-	2017 서울시 마을기업 신모델 개발 사업 용역	52,623,000	2	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27	2017-100	-	2017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기획·운영	45,339,000	2	센터 홈페이지
28	2015-152	-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판로개척지원사업	194,000,000	2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나라장터 공고 등을 표시 후 미공고
29	2015-287	-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이동형 홍보·판매부스 디자인 및 시공 용역	99,000,000	2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나라장터 공고 등을 표시 후 미공고
30	2016-001	-	2016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영역지원단 운영용역	195,000,000	1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나라장터 공고 등을 표시 후 미공고
31	2016-048	-	사회적경제 유통판로지원사업 수행용역	90,000,000	1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나라장터 공고 표시 후 미공고

연번	계약번호	계약상대자	계약명	계약금액(원)	응찰자수	비고(공고내용 등)
32	2016-049	-	2016년 장애인SE 육성사업 수행기관용역	185,328,000	3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나라장터 공고 등을 표시 후 미공고
33	2016-062	-	2016년 사회적경제 통합컨설팅 진단 평가사업 수행용역	88,550,000	3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나라장터 공고 등을 표시 후 미공고
34	2016-088	-	2016 사회적경제 디지털마케팅 지원사업	98,890,000	1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나라장터 공고 등을 표시 후 미공고
35	2017-001	-	2017 공공구매영업지원단 운영용역	199,800,000	2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나라장터 공고 표시 후 미공고
36	2017-031	-	2017년 사회적경제 기업영업지원단 운영용역	36,000,000	1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나라장터 공고 등을 표시 후 미공고
37	2017-046	-	생협매장 입점연계 판로지원사업 운영	40,000,000	1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나라장터 공고 등을 표시 후 미공고
38	2017-052	-	마을기반 먹거리 전략모델 확산체계 수립 용역	30,000,000	1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나라장터 공고 등을 표시 후 미공고
39	2017-053	-	지역기반 노인통합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산연구용역	39,963,000	1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나라장터 공고 표시 후 미공고
40	2017-114	-	청소년 사회적경제 '해냄' 프로젝트 실행지원사업 운영관리 용역	77,000,000	5	기안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나라장터 공고 등을 표시 후 미공고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익명(-)처리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2017 (2017.12.)	주의요구	-	-	-	-

제 목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분리발주 부적정

【 지적내용 】

- A법인은 2013.4.11.부터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 칭함)를 수탁 받아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13년 이후 317건(7,950백만원)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였다.
- 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르면,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이하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 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4,5에 따르면
 -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고 규정 되어 있다.

- 따라서, 센터에서는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계약법령 등을 포함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마포 생활기술융합제작소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면서 통합 발주하여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했음에도,
 - 아래 [표]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분리발주 내역”과 같이 각각 분리 발주 하여 특정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분리발주 내역

연번	구분	계약건명 (구매품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액 (천원)	계약방법
1	공사	생활기술융합제작소 전 및 기초설비 공사	B업체	20150121	19,800	1인견적 수의계약
2		생활기술융합제작소 골조 및 판넬 공사	C업체	20150121	18,500	1인견적 수의계약
3		마포생활기술융합제작소 내부 창호 및 도장 등	D업체	20150121	16,900	1인견적 수의계약
4	물품	생활기술융합제작소 공간조성재료 계약	E업체	20150121	19,700	1인견적 수의계약
5		생활기술융합제작소 공간조성재료(컨테이너)	F업체	20150121	19,800	1인견적 수의계약

- 그 결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반면,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에 참여(응찰)할 수 있었던 다른 업체에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 및 계약질서를 훼손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2017 (2017.12.)	시정요구, 통보	-	-	-	-

제 목 물품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함)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민간 네트워크 허브로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A법인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센터 물품관리규정 제7조(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의하면 센터 물품구입은 물품관리 담당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각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각 부서로부터 물품 구입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물품을 확인하여 비품대장에 물품을 분류 관리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센터는 '13년 이후 '17.9.25. 감사 당시까지 붙임과 같이 145건 78,220천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있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 비품관리 대장에 누락된 145건 78,220천원에 대해 즉시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또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통보)

붙임 : 비품관리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물품 현황(2013~2017)

구분	날짜	적요(물품명)	수량	단가	합계
1	2013-04-10	의자20(허브공간 조성)	20	50,000	1,000,000
2	2013-08-13	노트북외_LG전자_S550-PD60K	2	912,000	1,894,000
3	2013-09-05	카메라	1	125,000	125,000
4	2013-09-06	한글 2010SE프로그램2개	2	138,000	276,000
5	2013-09-06	노트북2대	2	1,110,000	2,220,000
6	2013-09-24	MS오피스 프로그램 2개	2	227,250	454,500
7	2013-12-12	모니터 구입	1	237,000	237,000
8	2013-12-13	모니터_사무용컴퓨터	1	228,790	228,790
9	2013-12-29	이동식 스크린_스페이스류	1	220,000	220,000
10	2013-12-31	앵글 선반_협의회 빈공간	1	700,000	700,000
11	2013-12-31	운영비_소프트웨어(MS오피스 3개)	3	259,000	777,000
12	2013-12-31	사무실 에어컨	1	1,225,000	1,258,000
13	2013-12-31	운영비 노트북 3대	3	590,000	1,770,000
14	2013-12-31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오피스 스탠다드2013 10개)	10	348,920	3,489,200
15	2013-12-31	앵글선반1 센터장실	1	350,000	350,000
16	2013-12-31	앵글선반1 협의회 사무실	1	550,000	550,000
17	2014-03-26	사무용 이동식 서랍	2	77,000	154,000
18	2014-07-29	목재 재활용함 협동허브 목재 분리수거함	4	135,300	595,320
19	2014-09-17	사무용 책상 제작 4개	4	200,000	800,000
20	2014-09-17	회의용테이블 제작 1개	1	271,000	271,000
21	2014-10-22	센터 비품 구입 전동드릴외	1	295,500	295,500
22	2014-12-31	프린터 구입	1	127,500	127,500
23	2014-12-31	청소기 2대 센터 공용 청소기 1.21지출	2	244,760	449,520
24	2014-12-31	앵글 제작 센터 사무실	9	105,000	945,000
25	2015-01-22	앵글 및 책상 제작	1	4,460,000	4,460,000
26	2015-09-03	무선수신기	10	132,000	1,320,000

27	2015-09-03	무선송신기	1	165,000	165,000
28	2015-12-29	컨테이너 20ft	8	2,888,750	23,110,000
29	2015-12-29	컨테이너 40ft	3	4,460,000	13,380,000
30	2016-07-15	LCD-projector	1	2,090,000	2,090,000
31	2016-12-20	파티션(800형)	2	60,480	120,960
32	2016-12-20	파티션(1600형)	19	94,710	1,799,490
33	2016-12-20	파티션(1800형)	13	140,040	1,820,520
34	2017-05-17	사물함	2	223,300	446,600
35	2017-06-30	냉난방기 CSV-Q115U	5	812,000	4,060,000
36	2017-06-30	냉난방기 CPV-Q156SBB	1	1,470,000	1,470,000
37	2017-06-30	냉난방기 CSV-Q135NW	1	1,050,000	1,050,000
38	2017-06-30	냉난방기 CPV-Q186SDD	2	1,870,000	3,740,000
합 계			145		78,219,900